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종사제한 대상 성범죄 추가 〉
■ 조정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262호)

2026. 4.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목 차

□ 조정식의원 대표발의(제2216262호)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3
1.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종사제한 대상 성범죄 추가(안 제16조의4제2항마목) ·	3
※ 참고자료	23

□ 조정식의원 대표발의(221626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조정식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6. 1. 22.
3. 회 부 일 : 2026. 1.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이하 “특별교통수단 운전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시행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죄에 대하여 위임받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종사제한 기간을 형량에 대한 고려 없이 20년으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고, 특히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 중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및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같은 형량에 해당하는 다른 범죄와 달리 아무런 제한 없이 특별교통수단 운전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형량의 수준이 유사한 다른 범죄도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종사 제한에 해당하는 범죄로 추가하여 비례의 원칙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안 제16조의4제2항).

Ⅲ. 검토의견

1.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종사제한 대상 성범죄 추가(안 제16조의4 제2항마목)

가. 검토의견

개정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죄(일반적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¹⁾ 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죄(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²⁾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가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4제2항마목).

현행	개정안
제16조의4(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① (생략)	제16조의4(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	② ----- -----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	개정안
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가 될 수 없다.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 ----- ----- ----- ----- ----- -----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가. ~ 라. (현행과 같음)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라. 「형법」 제33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또는 그 각 미수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마. ----- -----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4조-----
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바.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2. ~ 4. (생략) ③ ~ ⑥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특별교통수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³⁾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으로서⁴⁾ 현행법에 따라 각 지자체가 직접 의무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임⁵⁾.

2025년 12월 기준, 전국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는 5,073대이고, 특별교통수단 운행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5,861명임.(참고. 참조)

현행법 제16조의4제2항제1호에서는 위험성 있는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로부터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중범죄의 전과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운전자가 될 수 없

3)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

4)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8호)

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②~⑫ (생략)

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에 따른 「성폭력처벌법」 상의 범죄 중 종사제한 대상범죄는 같은 법에서 3년 이하의 징역형 이상의 형량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이며, 이들 범죄의 전과자는 형기를 마친 후 20년간⁶⁾ 특별교통수단 운전자가 될 수 없음.

【「성폭력처벌법」상 범죄 중 현행법상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종사제한 대상범죄】

징역형의 형량	조 문	종사 제한 여부	종사 제한 기간
사형 또는 무기징역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제1항	○	20년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제2항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제3항	○	20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제1항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제1항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제2항	○	20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제1항 제4조(특수강간 등)제1항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제1항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제2항	○	20년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제1항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제2항	○	20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4조(특수강간 등)제2항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제2항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제2항, 제5항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제3항	○	20년

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9(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① 법 제16조의4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징역형의 형량	조 문	종사제한 여부	종사제한 기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제3항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제3항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제3항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제2항	○	20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제6항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제1항	○	20년
7년 이하의 징역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제1항, 제2항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제1항, 제2항	○	20년
5년 이하의 징역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제2항	종사제한 없음	
3년 이하의 징역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제1항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종사제한 없음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제4항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제4항	○	20년
2년 이하의 징역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종사제한 없음	
1년 이하의 징역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종사제한 없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죄(촬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정한 죄)⁷⁾와 제14조의2제4항에 따른 죄(편집물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정한 죄)⁸⁾는 종사제한 대상범죄에 해당하여 20년간 특별교통수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운전자가 될 수 없는 데 반해,

법정형이 이와 같거나 이보다 높은 같은 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죄는⁹⁾ 종사제한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이들 범죄의 전과자는 현행법상 아무런 제한 없이 특별교통수단 운전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례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어 보임.

이에 개정안은 3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죄(일반적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와 제11조에 따른 죄(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를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종사제한 대상 범죄에 추가하여 비례원칙에 맞게 정비하려는 취지로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종사제한 대상범죄의 확대는 일반인에 비해 위험성에 취약한 교통약자의 안전 보장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해당 종사제한 범죄 전과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에 따른 죄를 종사제한 대상범죄에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들 성범죄자들로부터 교통약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과 이들 범죄 전과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이라는 법익을 비교형량하여 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행법상 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에 적용되는 「성폭력처벌법」상의 종사제한 범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택시 운전업무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성폭력처벌법」상의 종사제한 범죄¹⁰⁾와 동일함.

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④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생략)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다. (생략)

2. (생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득 제한) ① 법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둘째, 개정안은 「성폭력처벌법」상 3년 이하 징역형에 해당하는 일부 범죄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종사제한 대상범죄에 해당함에 따라 비례원칙에 입각하여 동일 법정형의 다른 범죄(같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에 따른 죄)를 종사제한 대상범죄에 추가시키려는 취지이나, 그보다 법정형이 높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죄(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서 구금시설의 감호자의 구금된 자에 대한 추행)¹¹⁾는 여전히 종사제한 대상범죄에서 제외되어 있음.

법정형을 기준으로 비례원칙에 맞게 종사제한 대상범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와 교통약자에 대한 위험성 측면에서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죄(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서 구금시설의 감호자의 구금된 자에 대한 추행)를 제10조제1항의 죄(일반적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제11조의 죄(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와 달리 취급할 필요성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10조제2항에 따른 죄(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서 구금시설의 감호자의 구금된 자에 대한 추행)도 종사제한 대상범죄에 추가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셋째, 안 부칙에서는 시행일 규정만 두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특별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수단 운전자 종사제한 대상범죄에 새로 추가되는 제10조제1항의 죄(일반적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제11조의 죄(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대해 개정안 시행 이후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할지, 시행 전에 해당 범죄를 저질렀으나 아직 선고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개정규정을 적용할지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를 두어 적용 관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¹²⁾.

나. 국토교통부 의견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일반인에 비해 성범죄에 취약할 수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개정안에 따른 성범죄 관련 종사자격 요건 강화에 동의함.

또한, 「교통약자법 시행령」 제14조의9에서 종사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성범죄 유형의 징역형 형량을 고려할 때, 종사자격이 제한되는 「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의 범죄와 동일한 형량(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따라 종사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함.

12) 유사 입법례로서, 택시 운수종사자의 결격사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추가된 법률 제11295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의 부칙에서는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후 형을 선고받은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음.

문 의 처
02)6788-5584

참고

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현황

(단위 : 인, 대)

구분	'24년말			'25년말		
	법정대수	운행대수	운전원 수	법정대수	운행대수	운전원 수
합계	4,750	4,896	5,523	4,715	5,073	5,861
서울	537	699	842	528	699	853
부산	305	222	201	301	232	232
대구	212	218	178	210	218	218
인천	254	256	256	255	276	276
광주	125	127	151	125	129	151
대전	130	111	128	130	116	136
울산	88	97	94	88	95	109
세종	24	29	34	24	33	41
경기	1,037	1,223	1,465	1,037	1,244	1,514
강원	228	243	290	226	263	318
충북	202	194	216	200	202	237
충남	269	233	220	272	250	267
전북	259	257	284	248	280	297
전남	293	230	280	288	250	330
경북	353	259	285	346	280	275
경남	367	430	516	371	437	529
제주	67	68	83	66	69	78

자료 : 국토교통부